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5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11월 22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7조제3항의 본문 중 “제1항 각 호의 현황을”은 제1항에 별도의 각 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되는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“제1항 각 호의 현황을”을 “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”로 수정함
(안 제3조2항제7호).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‘제1항 각 호의 현황을’을 ‘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’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)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·대비·대응·지원 및 긴급구조·화재진압·구호 등 지원체계(이하 “재난대응 및 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<u>제1항 각 호의 현황</u>을 점검하고,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제2항에</u> <u>포함된 사항을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특별법"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.

1. 초고층 건축물
2. 지하연계 복합건축물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

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난관리계획)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(이하 “재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2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의 목표
2.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
3.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
4.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
5.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,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, 통합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)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·대비·대응·지원 및 긴급구조·화재진압·구호 등 지원체계(이하 “재난대응 및 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

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,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및 훈련)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,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·훈련(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법·테러 등의 교육·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계지역의 출입 등)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입·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출입·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, 출입·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